

대학원 선수과목 관련 규정

1. 대학원학칙

제9조 (지원전공분야)

- ① 입학지원자가 지원하는 각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전공분야는 하위 학위과정의 전공분야와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된다. 다만, 일반대학원 지원자중 타 전공자는 학부과정 또는 석사과정에서 소정의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(변경 2017. 12. 28.)

제16조(학점취득)

- ① 일반대학원 과정의 과정별, 학기별 신청학점에 관하여는 대학원학칙시행내규에 따른다. 다만, 타전공 입학자가 선수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선수과목 학점을 포함하여 매학기 15학점까지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.(변경 2014. 8. 25.)
- ② 특수대학원 과정의 과정별, 학기별 신청학점에 관하여는 대학원학칙시행내규에 따른다.(변경 2014. 12. 12.)
- ③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에 타전공자가 입학한 경우의 선수과목 이수는 학과 전공교수가 동일 전공학점으로 인정한 과목을 포함하여 6학점 이상을 학부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한다.(변경 2014. 12. 12.)
- ④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선수과목 이수는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유사전공 출신자 및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의 동일 또는 유사전공 출신자가 입학하였을 경우 해당학과 전공교수가 동일전공 학점으로 인정한 과목을 포함하여 12학점 이상을 학부과정 또는 석사과정에서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.(변경 2017. 12. 28.)
- ⑤ 전항의 선수과목 취득학점은 본 대학원 정규과정의 전공 이수 학점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.

2. 대학원학칙시행내규

제17조(선수과목 이수대상자)

대학원에 입학한자로서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다음과 같다.(변경 2014. 12. 12.)

- ① 석사학위과정: 학부과정의 전공분야와 다른 전공분야에 입학한 자 또는 입학전형에서 선수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
- ② 박사학위과정: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와 석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와 다른 전공분야에 입학한 자 또는 입학전형에서 선수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

제18조(선수과목 결정 및 이수 지도)

- ① 선수과목 이수에 대한 지정과목은 해당학과 주임교수가 결정하고 이수대상자들에게 이수토록 지도한다.
- ② 해당학과 주임교수는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중 동일전공 학점으로 인정된 과목에 대하여 소정양식에 의거 대학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5조(교과목 중복이수 불인정)

- ② 선수과목 이수와 관련하여 동일 또는 유사과목으로 기인정된 교과목은 중복 수강하여 이수 할 수 없다.(변경 2000. 3. 22.)

3. 대학원학위수여규정

제3조 (응시자격)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.

2. 종합시험

라. 전항의 해당자중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는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.

제10조(논문제출 자격)

- ④ 석사, 박사학위과정의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 하여야 한다.(변경 2017.12.28.)